

특정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5년 집중호우 대비 공사현장 특정감사 —

2025. 7.

1. 행정상 일람표

(단위 : 천 원)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 치		재 정 상 조 치					
			시정	주의	회 수	금액	감액	금액	추정	금액
계		3건	3	0	0	0	0	0	0	0
1	@ @ @	※※※ 도심권 단절숲길 연결사업 추진 부적정	1							
2	☆☆☆☆☆☆	○○△△산단 산사태 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1							
3	◎ ◎ ◎ ◎ ◎	○○ ◇◇◇◇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1							

2. 처분요구일람표

- 1. ※※※ 도심권 단절숲길 연결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1
- 2. ○○△△산단 산사태 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6
- 3. ○○ ◇◇◇◇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시정) 9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도심권 단절숲길 연결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시
관 계 부 서 @@@
내 용

○○시 @@@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 도심권 단절숲길 연결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1] 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위치		사업량	사업비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읍면	리동		계	도급	관급				
※※※ 도심권 단절숲길 연결사업		♣♣	보도교 L=57.0m	1,300	1,233	67	2024.12.5.	2024.12.13.~ 2025.7.28.	♠♠토건(주) 000	

1. 교량받침 시공 부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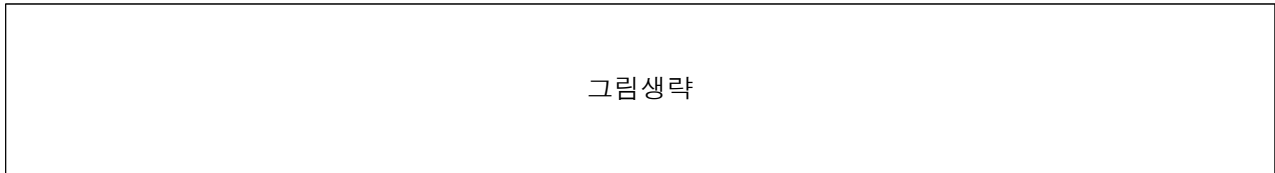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제4조, 제124조, 제138조, 제142조 등에 의하면 공사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에 관계 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독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설계도면·시방서와 자재의 사용 및 시공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가건설기준 KCS 24 40 05 : 2016 교량받침편 3. 시공 3.1.1 교량받침의 시공에 따르면 교량 받침은 설계시 계산된 반력이 작용하도록 상부구조물과 밀착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시 @@@에서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에 관계 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자재의 사용 및 시공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슬 플레이트¹⁾와 교량받침을 설치하면서 일부분만 용접이 부적정하게 시공되어 그 결과 상부에서 전달되는 하중이 교각 등 하부 구조에 안전하게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그림 1] 슬 플레이트와 교량받침 용접 부적정 시공 전경



2. 실정보고 없이 설치한 계비온 옹벽 시공관리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에서 1.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이 해당하는 때에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하고,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 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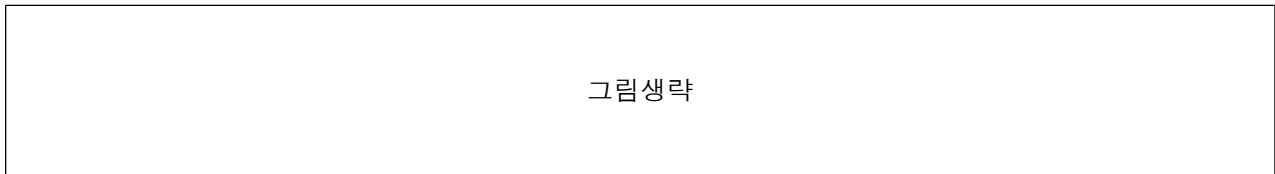
한편 「하천공사 설계실무 요령(환경부)」 제2장 하천호안 2.2.2 재료(제품)의 규격 및 할증에 따르면 옹벽형 돌망태 채움돌의 규격은 높이가 1.0m일 경우 150mm~300mm로 규정하고 있다.

1) 교량에서 받침부에 하중을 균일하게 작용시키기 위하여 거더하면에 설치하는 강판

따라서 ○○시 @@@에서는 설계변경은 공사의 설계 변경시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하고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여 하며, 옹벽형 돌망태의 채움돌은 높이가 1.0m일 경우 150mm~300mm로 시공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그림 2]와 같이 높이가 1.0m인 옹벽형 돌망태 3단 L=8.0m를 시공하면서 실정 보고 등 계약상대자와 설계변경 전 우선시공 등의 협의없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옹벽형 돌망태 채움돌 규격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크기보다 작거나 큰 채움돌을 사용하여 시공을 완료하였다.

[그림 2] 옹벽형 돌망태 채움돌 규격 부적정



3. 깎기 비탈면 시공관리 부적정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공고)」 제5장 깎기 비탈면 설계 5.4 표준경사 및 소단기준에 따르면 깎기 비탈면에서 토사 지반의 경사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토사 원지반 깎기 비탈면 표준경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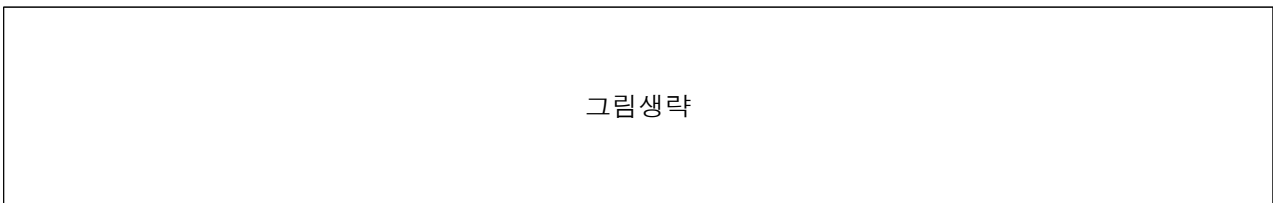
토질조건		비탈면 높이(m)	경사
모래			1:1.5이상
사질토	밀실한것	5이하	1:0.8~1:1.0
		5~10	1:1.0~1:1.2
	밀실하지 않고 입도분포가 나쁨	5이하	1:1.0~1:1.2
		5~10	1:1.2~1:1.5
자갈 또는 암괴 섞인 사질토	밀실하고 입도분포가 좋음	10이하	1:0.8~1:1.0
		10~15	1:1.0~1:1.2
	밀실하지 않거나 입도분포가 나쁨	10이하	1:1.0~1:1.2
		10~15	1:1.2~1:1.5
점성토		0~10	1:1.0~1:1.2
암괴 또는 호박돌 섞인 점성토		5이하	1:1.2~1:1.5
풍화암			1:1.0~1:1.2

또한 각기 비탈면의 높이가 10m이상인 비탈면에서는 비탈면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배수시설의 설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소단을 설치하여, 비탈면 중간에 5~20m 높이마다 폭은 1~3m의 소단을 설치하고 장비 진입 등과 같은 작업공간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단폭을 여건에 맞게 조정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 @@@에서는 토사 원지반의 토사조건 및 비탈면 높이에 따라 비탈면 경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높이가 10m이상인 각기 비탈면을 [그림 3]과 같이 설치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른 표준경사를 적용하지 않았으며²⁾ 각기 비탈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강공법도 당초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적절한 공법으로 설계변경도 없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3] 각기 비탈면 부적정 시공



2) 육안으로 비탈경사를 추정한 결과 약 1:0.5정도임

조치할 사항 ○○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부적정하게 시공한 교량받침, 계비온 옹벽 및 각기 비탈면에 대해 시방기준에 맞게 보완 시공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는 주의 처분 하시고, ◇◇◇은 훈계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산단 산사태 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시
관 계 부 서 ☆☆☆☆☆☆☆☆
내 용

○○시 ☆☆☆☆☆☆☆☆에서는 ○○시 ▲▲면, ▽▽동 일원에 “○○△△산단 산사태 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아래 [표 1]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표 1] 공사현황

(단위 : 백만 원)

공사명	위 치	사 업 량	공사(용역)금액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계	도급액	관급액			
○○△△산단 산사태 위험지역 정비사업	○○시 ▲▲면, ▽▽동 일원	산사태 정비공사 1식	1,286	1,253	33	2024.12.26 ~ 2026.12.25	♠♠♠♠신림조합	50%

1. 가설건축물 미신고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르면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³⁾,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등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발주청이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당 시장에게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한 후 착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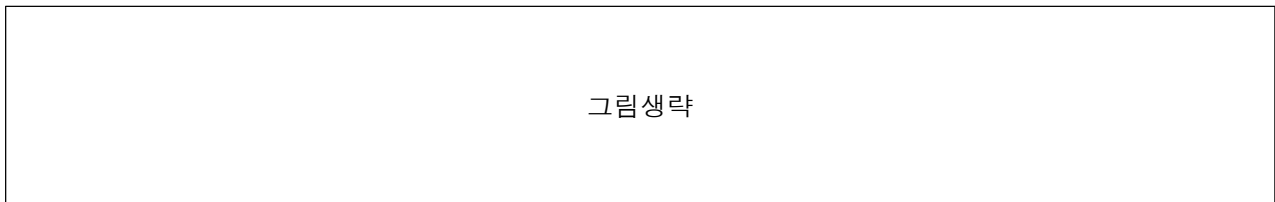
3) 3년 이내일 것.

그런데 ○○시 ☆☆☆☆☆☆☆에서는 ○○△△산단 산사태 위험지역 정비사업의 도급자인 ♣♣♣ 산림조합이 2024. 12. 26. 착공하여 아래 [표 2] 및 [사진]과 같이 ○○시 ÅÅ청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25. 4. 2. 에 설치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표 2] 가설건축물 축조 현황

위 치			가설건축물 축조현황		
주 소	지 목	소유자	구 조	면 적(m ²)	용 도
○○시 남구 ◇동 599번지	도로	국(건설부)	컨테이너 1동	18	공사용 가설건축물

[사진] 가설사무실 설치 현황



2. 공사감독 소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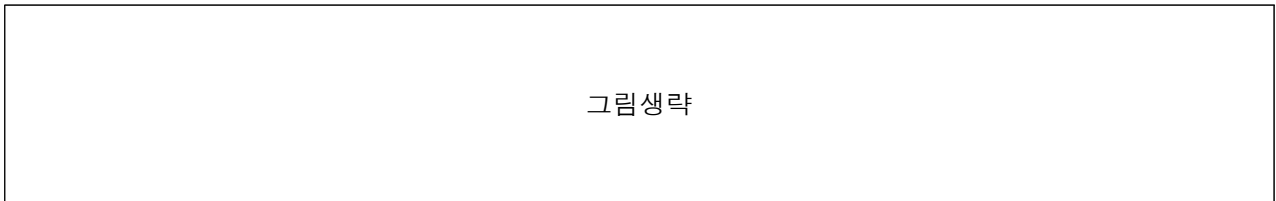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 제93조 및 제 138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및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작업단계별 시공상태의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재시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및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공사 목적물이 적정하게 시공되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

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재시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 ☆☆☆☆☆☆☆에서는 아래 [사진]과 같이 ●●● 3공장 지구의 사면보호를 위해 돌기슭막이(석축) 43m를 시공하면서 뒷채움 잡석(φ 150mm이하)을 설계도서와 다른 규격(φ320mm)의 골재로 시공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진] 재시공 대상현황



그 결과 골재 사이의 간격이 너무 커져 배수 불량 및 침하 발생이 우려되며 물리적 하중을 지탱하지 못해 석축 구조물의 균열이 발생될 여지가 크다.

조치할 사항 ○○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관련법령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이행 및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검토하시고 부적정하게 시공중인 석축에 대해 재시공하는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은 주의 처분 하시고, ♪♪♪은 훈계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시
관 계 부 서 ○○○○○○
내 용

○○시 ○○○○○○에서는 ◇◇◇◇ 512-2번지 ○○ ◇◇◇◇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를 아래 [표]와 같이 담당하면서 2022. 7월부터 2025. 6월 감사일 현재까지 안전 및 설계용역 평가 등 공공건축물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다.

[표] 공사 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발주부서 (사업기간)	건축 협약	착공 (완료일)	설계 금액	공사 금액	도급자 (감리자)	비고
1	○○ ◇◇◇◇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운동시설 2,421㎡	○○○○○○○ (22.7~25.12)	23.11.1.	23.11.3 (24.7.23)	417	6,625	(주)○○○건설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착공신고 지연

1. 추락, 낙하물에 대한 안전조치 부적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4조 및 제42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 등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⁴⁾, 수직

보호망⁵⁾의 설치,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37조 및 제138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주요 구조물의 시공 중 붕괴사고, 부실시공 등의 발생원인이 비계, 동바리, 거푸집 등 가시설의 구조 및 시공 부주의에 기인하는 점을 명심하여 공사 시공 전에 시공자로 하여금 가시설에 대한 설계, 구조, 시공의 검토를 하도록 하고, 시공과정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시설 공사와 영구 시설물 공사의 작업단계별 시공상태를 확인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시에서는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을 진행하면서 작업 중 낙하물 및 추락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고, 기 시공된 수직보호망 시공상태를 확인하여 탈락 또는 훼손된 경우 즉시 재설치 하도록 하며, 출입통제, 낙하물적재 및 주변정비 등 공사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시 ○○○○○에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아래 [그림]과 같이 건축물 비계 등에서 작업하면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난간, 이동계단, 안전발판 안전조치 미흡, 안전 캡 미설치 및 출입통제 부적정 등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둔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법령 취지와 달리 작업 중 낙하물에 의한 안전사고와 작업 중 추락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하여 설치

5) 가설 구조물의 바깥면 등에 설치하여 낙하물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2. 착공신고 및 건설사업관리 이행 부적정

「건축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에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기술지도 계약서 사본, 감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공사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는 법인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시에서는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을 진행하면서 착공신고서에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기술지도 계약서 사본, 감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공사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한 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품질 및 안전관리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시 ◎◎◎◎◎에서는 ○○ ◇◇◇◇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를 추진하면서 2023. 11. 3. 공사를 선 착공 후 공사발주와 동시에 시행되어야 할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 지연 등으로 약 263일 지난 2024. 7. 23에서야 착공 신고 후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법령 취지와 달리 착공신고 수리 지연 등으로 불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및 안전관련 설계도면 검토 등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설계용역평가 미실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제8조 및 제9조에 따르면 계약금액 220백만 원 이상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는 해당 건설공사가 착공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참여기술인의 적정성, 과업 이행 결과의 적정성 및 과업 이행내용의 충실성 등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발주청은 설계용역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가 자료를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작성·제출토록 하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발주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평가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시 ○○○○○에서는 ○○ ◇◇◇◇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를 시행하면서 착공일인 2023. 11. 3. 후 6개월 이내인 2024. 5. 3.까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설계용역평가를 하여 과업 이행 결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시 ○○○○○에서는 ○○ ◇◇◇◇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의 용역금액이 417백만 원으로 220백만 원이 넘어 건설기술용역 평가대상인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건설기술 진흥법」에 규정된 용역평가를 하지 않고 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설계업무를 수행한 용역업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4. 설계공모 관련 저작권 귀속 부적정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6조 및 「저작권법」 제10조에 따르면 입상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창작물의 저작자는 저작권(저작

인격권 및 저작권(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출품된 작품의 저작권(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은 출품자(창작자)에게 있으며, 공모전을 주최하는 기관은 입상한 응모작에 대해서도 저작재산권⁶⁾의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지할 수 없고, 입상작에 대해 저작재산권 전체나 일부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입상작을 발표한 후 거래 관행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 해당 응모자와 별도 합의를 통해서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인 경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응모자에 대해 상금 등을 지급하는 조항은 설계 공모전에 대해 참여를 유도하려는 ‘포상금’ 또는 ‘격려금’의 성격이므로 권리 양수의 대가를 미리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발주 기관이 설계자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전부 양도받는 조항은 부당하고 불리한 조항이기에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에서는 건축설계 공모를 진행하면서 설계공모 지침서 상 제출 작품에 대하여 별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설계자의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귀속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후 활용 등에 관하여는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도 ○○시 ○○○○○○에서는 ○○ ◇◇◇◇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건축설계 공모를 진행하면서 설계공모 지침서상에 당선작의 저작권 및 사용권 등 법적 소유권은 ○○시에 귀속되고 당선작 외의 작품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저작자와 별도의 협의 없이 전시 또는 출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실이 있다.

6)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저작권법」 제14조에 따르면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 전속적인 권리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공모전의 주최 기관이 응모작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에 한정됨

그 결과 응모자와의 별도 협의 없이 설계자의 저작권 등을 ○○시에 귀속하는 것으로 설계공모지침서에 공고하여 공모전을 진행함으로써 향후 저작권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진행 중인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시설 및 행정절차 누락사항은 규정에 맞게 실시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은 주의 처분 하시고, ▽▽▽은 훈계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